

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('26.9.16.) 조치 의결

증권선물위원회(위원장: 권대영)는 9월 16일 제16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해태제과식품(주)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※ 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	책임자	팀 장	류성재 (02-2100-2690)
		담당자	사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		담당자	주무관	윤우진 (02-2100-2698)
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	책임자	국 장	이재훈 (02-3145-7700)
		담당자	팀 장	유홍근 (02-3145-7737)

(붙임)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6.9.16. 의결)

[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해태제과식품(주) 결산기 : 2016.12.31. 2017.12.31. 2018.12.31. 2019.12.31.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업종: 식품 제조·판매업	【회사】 ①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(연결·별도 : '16년 13,678백만원, '17년 15,317백만원, '18년 11,256백만원, '19년 12,777백만원) -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,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②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-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함 ③ 외부감사 방해 - 회사는 감사인에게 허위의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할 것을 거래처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함	회 사 : - 과징금 ※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- 감사인지정 3년 -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(재무부서장) - 해임권고 상당 (前감사) - 검찰통보(재무부서장, 前감사)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